

의안번호	2219884
의 퇴 인	김미애의원
회 답 일	2026.10.1.
추 계 번호	26D34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규정함
- 다만, 개정안만으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인지와 이를 위해 구축할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¹⁾함
 - 또한, 보호조치로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²⁾,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³⁾, 신변안전조치⁴⁾ 등 보호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
- 1)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 ⑧ (생략)
- 3)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